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보관 위탁계약서

2020년 [8]월 [25]일



2022.06.30

005189

검	인
검인번호	제 호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고양시	덕양구 청중

위탁자: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은행
...
...
...

법무사 김명연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411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
☎:(02) 558-2254



본 자산보관계약서(“본 계약(서)”)는 2020년 8월 25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위탁자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그 후 별지1 신탁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를 고양시의 현물출자로써 취득하여, 본건 사업부지에 복합시설[분양 또는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이하 “본건 공동주택”), 주차장, 판매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하 복합시설 중 본건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이하 “본건 시설”이라 하며, 본건 공동주택 및 본건 시설을 총칭하여 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 자산을 보관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서 “은행”을 선임하고, “은행”은 이를 수탁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를 통하여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자산보관업무의 내용 및 계약 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 업무 및 자산보관 업무에 한정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1. “위탁자산”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액 또는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부동산, 권리, 현금, 증권 기타 재산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 및 운용과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5. “부동산관리/주택임대관리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부동산관리 및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본 계약에서 “은행”을 말한다.
7. “관련 수탁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2호 내지 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8. “자산보관계좌”라 함은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증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9. “위탁계좌”라 함은 대출금입금계좌,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일반수입금관리 계좌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금원을 추후 이체하고,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이나 준비금, 본건 사업의 공사대금 정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한 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원리금, 배당금 등)등의 현금을 입금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자산을 관리하고,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출, 자산관리위탁계약 기타 관련 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및 잔여재산분배금의 지급 등 위탁자의 종합적인 현금 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자산보관기관인 “은행”에 개설할 계좌를 말한다.

10.“본건 부동산”이라 함은 고양시 성사1동 394번지 일대 토지로서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11.“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을 말한다.

제 2 절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은행”에게 위탁하며,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보관

-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보관을 위탁하는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및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경료하는 업무
다) 본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의 기재사항 변경(근저당권 설정, 담보신탁의 수탁 등) 업무
라)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 가) 증권의 인수, 인도 및 보관. 전자등록대상 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자체 보관하는 경우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증권상 인정되는 원리금 수령, 유무상 청약 등 제반권리의 행사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가) “부동산투자회사 등”的 운용지시에 따른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나) “부동산투자회사 등”的 운용지시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지급

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운용지시에 따른 관련 수탁기관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운용지시에 따른 계좌개설, 폐지 및 변경 업무

마)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4. 해산(청산)관련 업무

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에 따른 보관업무 및 관련 실무 사무

제4조 (자산보관업무 등의 지시)

①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은행”에게 자산보관 및 그 부수업무에 관하여 제3조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지시를 하며, “은행”은 그러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적절한 지시를 접수한 경우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속히 그 지시를 수행한다.

1. “적절한 지시”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은행”에게 본 계약의 목적에 합당한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말하며, 그러한 지시에 따라 “은행”이 수행한 업무는 적절하고 정당한 수행이 된다.

2.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운용지시서에 “은행”에 신고된 운용담당자의 사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은행”에게 운용지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팩시밀리

나) 우편(등기 또는 항공) 또는 전보

다) 기타 E-mail 등 전자전송

3.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위탁자산의 거래약정 체결을 “은행”에게 운용지시함에 있어 약정의 세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행해진 기명날인은 제2호의 운용지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도달 시점(팩시밀리의 경우 수령확인 도달 시점)을 그 효력발생 시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자산 등)

① “은행”이 본 계약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위탁자산의 종류와 범위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확인하여 인도하는 다음 각호의 재산 등으로 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투자증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청약증거금서류 포함), 전자등록이 가능한 증권
3. 주권, 신주인수권증서(주식납입영수증 포함)
4. 출자증권, 주권미발행확인서, 주권보관증
5. 정기예금증서 등 금융기관의 각종 통장·증서류
6. 증권의 보관증, 통장
7. 기타 보관을 요구하는 투자자산으로서 “은행”이 보관함에 따른 법률상 문제 가 없는 것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자산의 소유자로 되기 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은행”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부동산의 보관방법

제6조 (부동산의 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동산투자회사”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수탁자인 “은행”에게 신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보관을 위탁하기로 한다.

제7조 (신탁의 목적)

제6조에 따른 본건 부동산의 신탁은 “은행”이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명의를 보존·관리하고,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경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담보신탁의 취지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신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자)

- ① 제6조에 따른 본건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다만, 본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변경함으로써 대출기관을 위한 담보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은행”的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속한다.
-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익자를 교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지체없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책임)



- ①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본건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다.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 계약(예컨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기간 중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등의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제한하는 사업인정에 관한 통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나 통지를 받는 경우 “은행”은 지체없이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은행”은 본건 부동산 또는 본 계약상 부동산 보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상 부동산보관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이 소송행위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에는 “은행”이 부담한다.

제11조 (신탁원본)

- ① 신탁의 원본은 본건 부동산과 본건 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이 있는 경우 또는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2조 (신탁수익)

신탁의 수익은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과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본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현물청산을 포함한다)하기로 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신탁의 일부종료)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제6조에 따른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탁수익의 교부)

“은행”은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과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17조

소정의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신탁수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증권 및 현금의 보관방법

제16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방법)

①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받아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게 될 증권
2. 기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증권

② “은행”은 보관을 위탁받은 수표,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배서 등)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처분하게 될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

1. “은행”은 증권상 인정되는 이자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등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유·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권리부여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은행”이 그 통지 시에 지정한 날까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상실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은행”은 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의 소집통지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요령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자산파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제17조 (현금의 보관 및 관리방법)

- ①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여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계좌 중 어느 계좌에 입금할지에 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간의 사업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시 및 유상증자 시에 출자된 현금
2.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 차입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게 될 현금
3. “은행”이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현금(예컨대 이자, 배당금 등)
4. 기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현금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가 그 소관업무에 의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인출하여 제3자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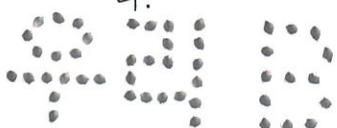
1.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취득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 차입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현금
2. “은행”이 본건 부동산을 신탁받음에 따라 행정기관, 관할법원(또는 등기소) 및 과세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현금(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3.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 및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수수료 및 비용

4. “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영업외 비용(제세공과금 등)
5. 기타 “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현금
- ③ “은행”은 제1항의 위탁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자의 계산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예금의 직전 이자 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매일별 예금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해당예금 이자지급일에 예금잔액에 가산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1개월전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항의 약정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해지 또는 변경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본 약정에 따른다.
 3. “은행”은 예금거래약관의 변경 등에 따라 예금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거래 영업점 지정 및 예금의 종류 변경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절 권한과 의무

제18조 (자산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

- ①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은행”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은행”的 고유자산 및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등”的 지시에 따라 그 자산을 인수, 인도, 수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그 지시받은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발견한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추가지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은행”은 매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을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와 내역을 검토하고 자산내역서 등을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은 보관자산(부동산, 증권, 현금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보유자산별 잔액명세서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은행”은 정기통지 이외에도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보관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

- ① “은행”은 관련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증서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협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투자자산의 인수, 보유 및 등록 등을 위하여 전자등록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회계장부, 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 ① “은행”은 본 계약에 의한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장부 등 그와 관련된 기록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시 및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주주 등이 “은행”에 대하여 자산보관과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관련법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서류(이하 “관련서류”)를 “은행”의 본점에 비치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요청 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련 수탁회사와의 협조의무)



- ① “은행”은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련 수탁 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련 수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관련법령상 보고, 통지 및 공고 의무준수를 위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지행위 등)

- ①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을 “은행”의 고유자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기타 관련법령상의 금지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 ② “은행”은 제3자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야기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외관상 그러한 이해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절 보수 및 비용부담

제23조 (보수)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자산 보관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② 보수는 연 금삼천만원(₩30,000,000)(해당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매 분기 단위로 분기 종료 후 “은행”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본건 부동산의 일부 처분 및 추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위 보수의 액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단, 최초 분기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분기 말까지, 최종 분기는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로 하며, 최초 분기와 최종 분기는 해당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기로 한다.

제24조 (비용 부담)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건 부동산의 신탁에 따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산에서 지불하며,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요청 시 그 비용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절 보증 및 책임

제25조 (진술 및 보증)

- ① 영업인가를 득한 후, “부동산투자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자본금, 발기인,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②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신탁업법의 인가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③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보증한다:
 - (i) “은행”은 “은행”的 임직원이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여 “은행”的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ii) 당해 절차와 기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의 해당규정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제26조 (제공서류 등의 보증)

- ①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위탁사무의 지시 · 통지 및 확인 등과 관련, 상대방에게 제공한 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진정성과 적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상호 보증하기로 한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책임과 면책)

- ① “은행”이 자산보관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 정관 또는 본 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기타 모라토리움·긴급조치·전쟁·천재지변·관련 수탁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산보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은행”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해지 등

제28조 (계약의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금의 보관과 관련된 업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시 까지로 한다.

제30조 (계약의 변경)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29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감독당국의 지침의 변경 등으로 긴급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에게 신탁하는 본건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은행”에게 신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은행”에 대하여 본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별지 1의 신탁부동산의 변경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的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본건 부동산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다른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기간(이하 "시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새로운 자산보관회사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② “은행”에게 인가취소, 지급불능,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 자산보관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사를 접수한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영업인가 후에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을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없는 한 동 계약해지의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영업인가 신청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부동산매입계획(현물출자 포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별도의 책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계약종료시의 조치)

- ①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 시점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시점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및 현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 및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종료시점의 최종계산서와 자산보관 상황을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이미 통보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시하는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업무를 즉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 조치(자산보관 상황의 설명, 업무이관 관련 인력확보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은행”에게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절 기 타

제33조 (양도 및 재위탁)

- ① “은행”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은행”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산보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의 사유, 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지시 및 통지)

-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한 지시 및 통보(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통지를 포함)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편 배달, 내용증명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전자전송 방식에 의해 전달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 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사용인감 신고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 ③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접수시점을 그 효력발생시점으로 본다.

제35조 (비밀 유지)

“은행”(“은행”의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전승인 또는 관련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산보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관계법령의 준용)

- ① 계약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실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합의에 따라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③ 본 약정의 내용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그 효력은 당해 조항에 대해서만 부인되며, 그 이외의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날인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다.

2020년 8월 25일

“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회사명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은행”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회사명 :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표자 : 권 광 석
자산수탁부장 : 김 형 육



우리은행

별지 1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58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로	151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로	10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3	도로	22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로	44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6	도로	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8	도로	16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로	105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로	6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2,484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2	도로	265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로	35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2	도로	2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3	도로	306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43	구거	324



별지 2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본건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

1.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
2.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등 보존행위
3.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4. 본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5. 타 "은행"의 관리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행위

② "은행"

1.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2.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담보권 설정 포함)에 관한 계약체결 및 등기명의를 제 3 자에게 이전하는 업무



자산보관 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024. 04. 16

다음 당사자들은 2020년 08월 25일 자산보관계약(“본 계약(서)”)을 체결한 바 있다.

위탁자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的 대표자 변경 및 “본 계약(서)”별지1 부동산의 표시에 수정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변경 항목	기준	변경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변경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총무공동) 대표자 :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대표자 : 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은행” 대표자 변경	권광석	이원덕
별지1 문구 변경 (본 변경계약 별지1-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현물출자 외 부지 포함되어 수정)
별지1 부동산 목록 추가 (본 변경계약 별지1-1 참조)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 (누락 필지 추가)

법무사 김명연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411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

☎:(02) 558-2254



제3조(변경계약의 효력)

- ① 본 변경계약에 따른 변경은 본 변경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며, 본 변경계약과 “본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본 변경계약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② 전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기존 “본 계약(서)”는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완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별지 1-1. 신탁부동산의 표시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은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다.

2022년 06월 24일

“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회사명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 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인)



“은행”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회사명 :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표자 : 이 원 택
자산수탁부장 : 김 형 옥



별지 1-1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58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로	151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로	10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3	도로	22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로	44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6	도로	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8	도로	16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로	105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로	6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2,484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2	도로	265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	대	2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로	35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2	도로	2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3	도로	306
1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43	구거	324

별지 1-2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801	8,58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로	151	151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로	10	10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3	도로	26	22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로	44	44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6	도로	7	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8	도로	20	16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로	105	105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로	6	6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2,482	2,482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2	도로	374	265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3	대	2	2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로	35	35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2	도로	5	2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3	도로	2,351	306
1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7	잡종지	112	112

별지 1-3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581	8,58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로	151	151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로	10	10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3	도로	26	22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로	44	44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6	도로	7	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8	도로	20	16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로	105	105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로	6	6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2,482	2,482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2	도로	374	265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3	대	2	2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로	35	35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2	도로	5	2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3	도로	2,351	306
1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7	잡종지	112	112

별지 1-4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561	8,56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6	잡	20	20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	151	151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	10	10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1	도	22	22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	44	4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2	도	3	3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3	도	16	16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	105	105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	6	6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9	9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4	대	2,473	2,473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5	도	274	274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3	대	2	2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	35	35
1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8	도	2	2
1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28	도	317	317

1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43	도	151	151
1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7	잡	112	112
2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8	도	61	61
2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2-10	도	81	81
2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3	전	33	33
2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6	도	8	8
2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3	도	66	66
2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7	도	106	106
2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9	도	172	172
2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40	도	88	88
2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6	도	10	10
2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1	도	21	21
3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71	도	432	432
3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41-32	도	682	682
3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4	전	4	4
3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7	도	43	43
3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8	잡	219	219
3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7	답	14	14
3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49	대	36	36
3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0	대	43	43
3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29	임	2,742	16
3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2	대	1	1
4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48	도	33	33

4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1	대	14	14
4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3	대	3	3



별지 1-5

신탁부동산의 표시

-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부동산이 없음.
- 추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개발행위를 통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재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음.

1.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	잡	8,561	8,561
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6	잡	20	20
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8	도	151	151
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2	도	10	10
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1	도	22	22
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5	도	44	44
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2	도	3	3
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3	도	16	16
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9	도	105	105
1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6-10	도	6	6
1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1	대	9	9
1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4	대	2,473	2,473
1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5	도	274	274
1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8-53	대	2	2
1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0	도	35	35
1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8	도	2	2
1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85-28	도	317	317

1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43	도	151	151
1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7	잡	112	112
2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68	도	61	61
2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2-10	도	81	81
2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3	전	33	33
2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6	도	8	8
2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3	도	66	66
2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7	도	106	106
2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39	도	172	172
2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5-40	도	88	88
2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6	도	10	10
2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1	도	21	21
3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692-71	도	432	432
3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41-32	도	682	682
3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4	전	4	4
33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3-7	도	43	43
34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394-8	잡	219	219
35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10-27	답	14	14
3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49	대	36	36
37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0	대	43	43
38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29	임	2,742	16
39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2	대	1	1
40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48	도	33	33

41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1	대	14	14
42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407-53	대	3	3

2. 건축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76
이편한세상시티원당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1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76 대 2339.9 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비율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m ²)		대지권의 비율(m ²)		
1	1	-	101	철근콘크리트	101호	54.9774	2339.9	분의
2	1	-	102	철근콘크리트	102호	77.1963	2339.9	분의
3	2	-	201	철근콘크리트	201호	66.2567	2339.9	분의
4	2	-	202	철근콘크리트	202호	79.3118	2339.9	분의
5	2	-	203	철근콘크리트	203호	70.5885	2339.9	분의
6	2	-	204	철근콘크리트	204호	78.7885	2339.9	분의
7	2	-	205	철근콘크리트	205호	92.3860	2339.9	분의
8	2	-	206	철근콘크리트	206호	127.5490	2339.9	분의
9	2	-	207	철근콘크리트	207호	46.5929	2339.9	분의